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
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위임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위임(제21조)

- 1)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해서는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.

나. 갯벌복원사업 및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의 위탁(제22조)

- 1) 갯벌복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.
- 2)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대통령령 제 호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
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
갯벌의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

제22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(법 제21조에 따른 갯
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·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
시계획의 수립·변경은 제외한다)

5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

6.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·변경 및 해
제를 위한 사전검토

7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사
전검토

제22조제2항 중 “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”

를 “다음 각 호의 업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(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·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·변경은 제외한다)
 2.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
- 제22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2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(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·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·변경은 제외한다)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	제21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22조(업무의 위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.	제22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4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(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·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·변경은 제외한다)
<u><신설></u>	5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
<u><신설></u>	6.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·변경 및 해제를 위한 사전검

<u><신 설></u> ② 시·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. 1.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토</u> 7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 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을 위한 사전검토 ②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업무-- ----- -----. 1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갯벌 복원사업의 시행(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·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·변경은 제외한다) 2.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③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갯벌 복원사업의 시행(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·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
---	---

2. (생 략) ④·⑤ (생 략)	<u>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·변경은 제외한다)</u>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327